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019-51호 2019년3월19일(화)

여 수 시 보

시정지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여수시 고시 제2019-74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3 ○여수시 고시 제2019-7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5

【공 고】

○여수시 공고 제2019-746호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용역 입찰 재공고 /6 ○여수시공고제2019-758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51 ○여수시 공고 제2019-762호 여수시 체육진흥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52 ○여수시 공고 제2019-767호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63 ○여수시 한려동 공고 제2019-10호 한려동 통장(2, 7, 10통) 모집 공고 /69

커				
람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019. 3. .

여 수 시 장

-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연약지반 보강(재하성토)사업
-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
 - 가. 성 명: (당초)롯데케미칼㈜ 김교현, 허수영, (변경)롯데케미칼㈜ 김교현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신천동, 롯데타워)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 가. 사업의 목적: 기 준공된 확장단지 6BL에 재하성토(PDB공법, 개별압밀진공공법, 치환) 시행 후 지반 안정화를 시켜 공장 증설부지 조성
 - 나. 사업의 개요: (당초)276,000㎡, (변경)365,030㎡
-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가. 위 치: 여수시 중흥동 1742번지
 - 나. 면 적: (당초)276,000㎡, (변경)365,030㎡
-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8. 5.14. ~ 2020.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게재생략
-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 8. 국 . 공유지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 9.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 10.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 659-40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 자의 성명.주소

연번	위치	지 번		지 적	신청면적	소 유 자		刊
" "	11/2/1		1	(m²)	(m²)	주 소	성 명	고
			지 목		276,000			당 초
;	계	1필지		453,977				<u>소</u> 변
					365,030			경
					276,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당
1	중흥동	1742	장	453,977		올림픽로 300	롯데케미칼㈜	초 변
				,,,,,,,	365,030	(신천동, 롯데타워)		
					000,000	(223) X 1 11)		경

여수시 고시 제2019 - 76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허가(승인)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공사내용	
번호 (허가(승인)일)	주 소	성 명		(m²)	교부일자	- ' '' -	
2018–108 ('18.9.11)	여수시 시청로1	여수시청 (섬자원개발과)	율촌면 봉전리 179-1 일원	84.42m²	2019. 3. 19.	율촌면 봉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2019. 3. 19.

여 수 시 장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 입찰 재공고

지역의 무형문화재와 민속예술 발굴과 재조명을 위한 자료정리 및 고증으로 전통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공연 시나리오 작성 및 연출방법 등 모색을 통해 Only One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 이미지 확립 기반을 구축키 위해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을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용역내용 :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예술 활용 상설공연 방안 등(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의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다.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3.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업체이며,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개인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관련분야 단일건 계약 5천만원(VAT포함) 이상의 이행완료 실적이 있는 사업자(계약 이행실적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야 참가 가능)
 - * 실적인정 관련분야 : 문화예술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전차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보유한 업체
-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제안서 제출

- 가. 일 시 : 2019. 3. 29.(금) (1일간) 10:00 ~ 17:00
- 나. 접수장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1(학동)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입찰참 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 1부, 인감도장(사용 인감)지참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48호, 2018.8.31)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
-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표에 의거
-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 1) 일시장소 : 2019. 4. 11.(목) 14:00 여수시청 상황실(2층)
 -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제안설명 : PT발표(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며, 비공개 원칙
-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협상기간 및 계약체결

-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내에서 협 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나.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야 함
- 라.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함.
- 마. 본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 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바.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시 규정에 따릅니다.

2019. 3. 19.

여 수 시 장



2019. 3.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목 차

I . 과업안내 ····································	3
1. 과업목적	3
2. 과업개요	3
Ⅱ. 과업의 범위	3
1. 공간적 범위	3
2. 시간적 범위	3
3. 과업내용	3
4. 조사범위 및 시기	4
5. 조사요건	4
Ⅲ. 과업수행 지침	4
1. 일반사항	4
2. 평가수행 세부조건	5
3. 과업보고	6
4. 자문회의 등 개최	6
5.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6
6. 과업종료	6
7. 기타사항	7
8. 보안대책	8
IV. 추진일정 등 보고서 제출	8
1. 착수보고	8
2. 중간보고회	8
3. 최종보고회	8
4 수시보고	8
5 성과품 납품	8
6 성과품 검수	9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I. 과업안내

1. 과업목적

- O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각종 전통 민속 문화예술을 발굴하여 체계화 하고 고증을 통한 문화예술 상설공연을 실시 Only One 지역브랜드 이미지 확립 기반 구축
- O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 민속예술 발굴과 재조명을 위한 자료정리 및 고증을 통한 전통문화예술 발전 토대 구축
- O 지역 대표 전통 민속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공연 시나리오 작성 및 연출방법 등 모색

2. 과업개요

O 사 업 명 :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

O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O 사 업 비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 일체 포함)

Ⅱ.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여수시內 일원

2. 시간적 범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3. 과업내용

- O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예술 전수조사 및 발굴.고증
- O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예술 육성 방안
 - 문화예술 상설공연 방안

- 단위별 공연각본 및 시나리오 작성
- 상설공연 장소 선정 및 구축 방안
- O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육성 방안 및 **브랜드 네이밍** 제시
 - 여수시 문화예술 공연 SWOT 분석 및 STP전략 제시
 - 여수시 문화예술 공연 현실태 분석
 - 타 시 군 육성사례 비교 검토
 - 인근 시·군 연계 공연 방안
 - 지역예술단체 참여 방안 및 전국 홍보 방안 등
- O 기타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여수시 요청사항
 - 이순신 관련 다양한 문화공연 연계 방안
 - 단위 공연의 연계화 또는 단위 공연 특화 등 다방면 검토
 - 원형을 유지하되 현대감각을 가미한 각색
 - 공연 현대화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 4. 조사범위 및 시기 : 여수시전역 및 전여수시역사내
- 5. 조사요건 : 지역전문가 30%이상 참여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에 대한 성과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시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계약법, 여수시의 관련 관련 규정에 의하여 市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서 및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과업추진 일정계획,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과업수 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O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담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 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입되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 O 보고회, 설명회, 각종 자료 수집, 조사 등 업무수행상 소요 되는 일체 비용은 과업수 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새로운 과업이 필요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O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市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용역비 감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 O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 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회의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관계기관 협의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자료 제출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O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준한다.
- O 자료제출 등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유관기관 보고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 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및 작성방법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인쇄 제 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O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평가수행 세부조건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발주처와 1차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발주처 및 유관기관·단체와 수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O 도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및 여수 전지역 전통 문화예술 현황 조사와 발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의 인용과 출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3. 과업 보고

O 정기보고

- 착수보고 :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방향, 추진일정 보고

- 중간보고회 : 계약 후 3개월 이내 중간보고

- 사업보고 : 전월까지의 추진 상황보고

- 최종보고회 : 계약 완료일 2주 이내 협의 후 진행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시 현안사항 및 과업 진행사항을 요청받은 날로 부 터 3일 이내에 보고

4. 자문회의 등 개최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 회의.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 며, 그 결과를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5.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거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시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과업종료

- O 과업수행의 종료는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어 검수가 완료된 때로 한다.
- O 과업이 종료된 후 과업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시는 과업수행기관은 그 부분을 재실시 하여야 한다.
- O 과업수행기관은 여수시 및 제3자에게 과업수행과정 또는 과업 결과로 인해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7. 기타사항

- 과업수행 중 사전에 발주처의 사정으로 일부계획이 변경될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 시 수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과업수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 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 니며, 용역이 끝난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 부담 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 계약체결 시 과업수행지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용역 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O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수행 내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O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보안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발주처는 본 과업의 수행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Ⅳ. 추진일정 등 보고서 제출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O 과업수행방향과 방법, 추진일정표 등
- O 분야별 참여 연구원 명단 및 보안 각서
- O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 2. 중간보고회: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제출 및 프리젠테이션 보고
- 3. 최종보고회 : 계약 완료일 2주 이내 협의 후 진행
 - 계획(안) 최종결과(의견수렴 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완본, 요약본) 제출 및 프리젠테이션 보고
 - 4.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때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사항 보고
 - 5. 성과품 납품: 계약 완료일까지
 - O 최종보고서 20부
 - O 요약보고서 20부 및 성과품 파일 CD 3개, PPT파일

6. 성과품 검수

- O 보고서의 작성은 완료기한 7일 전까지 발주처 담당자의 사전검사를 완료한 후 인쇄하여야 함
- 성과품은 납품된 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미비사항이 발생되어 보안요청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수정·보완 하여야 함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용역 저 안 요 청 서



< 목 차 >

I.	. 세안개요	
	1. 사업개요 1	L
	2. 목 적 1	L
п.	제안요청 내용	
	1. 과업개요 1	L
	2. 과업수행 일반사항 4	
Щ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6	5
	2.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
	3. 제안서 평가 및 평가위원회 개최	7
	4. 과업추진 일정	7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8	3
IV.	협상절차 1. 협상적격자 선정)
V.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12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2	<u>)</u>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13	
	4. 제출서류 14	1
	5. 기타····································	
VI	입 챀 및 제 안서 관련서식 15	

I 제안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사 업 비: 100백만원(부가세포함 및 제반경비 일체 포함)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목 적

- 가. 여수 지역을 대표하는 각종 전통 문화예술을 발굴, 체계화 하고 고증을 통한 문화예술 상설공연을 실시 Only One 지역브랜드 이미지 확립 기반 구축
- 나.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 민속예술 발굴과 재조명을 위한 자료정리 및고증을 통한 전통문화예술 발전 토대 구축
- 다. 지역 대표 전통 민속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공연 시나리오 작성 및 연출방법 등 모색

Ⅱ 제안요청 내용

1 괴업개요

가.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여수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나. 과업내용

○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예술 전수조사 및 발굴·고증

-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예술 육성 방안
 - 문화예술 상설공연 방안
 - 단위별 공연각본 및 시나리오 작성
 - 상설공연 장소 선정 및 구축 방안
-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육성 방안 및 브랜드 **네이밍 제시**
 - 여수시 문화예술 공연 SWOT 분석 및 STP전략 제시
 - 여수시 문화예술 공연 현실태 분석
 - 타 시 군 육성사례 비교 검토
 - 인근 시·군 연계 공연 방안
 - 지역예술단체 참여 방안 및 전국 홍보 방안 등
- 기타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여수시 요청사항
 - 이순신 관련 다양한 문화공연 연계 방안 등
 - 단위 공연의 연계화 또는 단위 공연 특화 등 다방면 검토
 - 원형을 유지하되 현대감각을 가미한 각색
 - 공연 현대화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다. 조사범위 및 시기: 여수시 전역 및 전 여수시 역사시대

라. 투입인력(전문인력) 요건

구 분	자 격	구 성	비 율
一	\ \ \frac{1}{1}	지역	외부
전문인력	- 박사학위자로 3년이상 관련분야업무 수행한 자 - 석사학위자로 6년이상 관련분야업무 수행한 자 - 학사학위자로 8년이상 관련분야업무 수행한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0%	70%

※ 협상업체는 협상고정에서 인력 리스트를 작성하여 여수시와 초종 협약해야 함 마. 참고사항

○ 보고서 작성

- 여수시에서 제시하는 자료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괴업목적과 내용이 포함된 세부적인 목차와 지면구성안 작성 제출하되 본 제안요청사에 없는 시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내용은 별도 제안이 가능

○ 성과품의 납품과 수량

- 최종성과품 납품 : 여수시(문화예술과)의 검토 완료 후 납품

- 납품기한 : 계약 완료일까지

- 납품장소 : 여수시(문화예술과)

- 성과품 내역: 최종보고서 20부, 요약보고서 20부, 성과품파일 CD 3개, 최종본 PDF 파일

- 성과품 납품 후 중대한 오류(오탈자) 제본불량 등)가 발견된 경우 계약업체는 성과 품 일체를 화수, 수정 보완 후 다시 납품해야 함
- 여수시의 필요에 따라 납품부수와 면수, 납품시기와 장소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변경·조정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상호 협약하여 정함)

2 괴업수행 일반/항

가 괴업이 착수

- 용역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 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괴업수행 방향 및 괴업내용
 - 세부수행 계획표 및 일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시엄비 소요명세서(사출내역)
 -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 및 승인 시항 등
- 용역계약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괴업수행내역은 감독자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 요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

- 본 과업 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감독자의 요청시 수시로 자료제출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성과는 중간보고, 최종보고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안바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괴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미한 사항과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 할 수 있으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보안대책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의 대표자 및 본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 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 야 하며, 위의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져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사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 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자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

가이루어지않을 경우에는 감독의 해석에 따른다

- 감독자의 시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시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시업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Ⅲ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및 입찰참기자격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하는체 않시 복자 결정」은 제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나.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부정당업자의 압발 참가지격 제한 이 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3조(압발의 참가지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 찰의 참가지격 갖추고, 제2서 접수 미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당되(요요)에 학술연구용역(요즘) 그 1169)으로 압발 참가 등록하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관련분야 단일건 계약 5천만원(VAT포함) 이상의 이행완료 실적이 있는 사업자(계약 이행실적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참가 가능)
 - *실적인정관련야: 문화를관련연구용역수행실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보유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다.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라.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 공고기간 : 2019. 3.19.(화) ~ 3.28.(목)

나. 제출기한: 2019. 3. 29.(금) 09:00~17:00 까지(시간엄수)

다. 제출장소 :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라.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한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및 평가위원회 개최

가.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구분,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70%)로 구분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며,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기획·편집 및 제작 등 수행능력을 평가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나. 평가위원회 개최

- 개최 일시 : 2019. 4. 11.(목) 14:00 여수시청 상황실(2층)
 - ※ 제안서평가 일정 및 장소는 변경 가능.
- 평가위원회 구성: 7명(위원장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48호)
- 진행방법 : 제안사별 실무책임자 프레젠테이션(10분)

4. 과업추진 일정

가 정기보고

- 착수보고 :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방향, 추진일정 보고

- 중간보고회 : 계약 후 3개월 이내 중간보고

- 사업보고 : 전월까지의 추진 상황보고

- 최종보고회 : 계약 완료일 2주 이내 협의 후 진행
- 나.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시 현안사항 및 과업 진행사항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
 - ※ 여수시-용역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비고
	합계		100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20점)	- 수행경험(실적) - 전문인력 보유현황 - 기업신용평가등급	20	발주 기관
(90점)	정성적 평 가 (70점)	- 사업 기획능력 - 과업의 이해도 - 사업관리능력	70	평가 위원
가격평가 (10점)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제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18. 1. 1.) 험산식'참조	10	평점 산식

가. 정량적 평가(20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계	※ 관련 증빙자료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0점 처리				
수행실적	최근 5년이내 단일 발주액 5천만원 이상(건수)	6건 이상 4건 이상 ~ 6건 미민 2건 이상 ~ 4건 미민 2건 미만		: 10점 : 8점 : 6점 : 4점	10
전문인력 보유현황	전문인력 보유현황	8인이상 6인이상~8인미만 4인이상~6인미만 2인이상~4인미만 1인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5
경영상태	기업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 평가 AAA,AA+,AA0,AA- A+ A0 A- BBB+ BBB0 BBB- BB+,BB0 BB- BB+,BB0 BB- CCC+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이하	구분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5

[주] 1. **수행경험(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성과보고서, 연구보고서 실적 (단순 인쇄실적이나 디자인실적은 유사사업으로 보지 않음)

· 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건당 5천만원 이상만 첨부

2. 전문 인력 보유현황

참여인력 등급은 연구원 수준에 따른 인력 수임(보조연구원 1명, 연구원 1.2명, 책임연구원 1.4명)

등급	학력경력자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업무를 수행한 자
연구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업무를 수행한 자
보조연구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업무를 수행한 자

3.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것만 인정

나. 정성적 평가(70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계		70
	• 과업목적에 부합되는 기획안(목적성)	15
사업 기획능력	• 세부 기획안 체계적인 구성여부(체계성)	15
	• 차별화된 사업기획 구성여부(창의성)	10
과업의 이해도	• 문화예술 브랜드사업의 이해도	5
되다의 이에도	• 민속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정도	5
	• 참여인력의 전문성(경력, 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5
사업관리 능력	• 과업수행을 위한 업무분담 구성 및 조직의 적정성 여부	5
122-101	• 사업관리 체계와 수행계획의 합리성	5
	• 제안업체의 수행의지 및 사후관리 방안	5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 수를 합신하여 신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 입찰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 경우
 -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 가격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함(셋째자리 반올림)

업체선정 평가기준(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기격평가-10점)에 의거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70점 이상인 지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 11. 8.)에 의거합니다.

Ⅳ 협상절차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 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현상순서

-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 위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 가. 평가서 평가위원 명단, 평가 내용,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나.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담당부서에 계약 체결 의뢰함
- 라.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세부내용은 첨부된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고하고, 그 외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름

Ⅴ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가. 발주기관이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다만, 계 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 다. 제안서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가. 제안서는 A4 규격의 용지로 작성, 표지는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양식(별첨3)을 사용,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 책자형식으로 편철 후 10부 제출
- 나. 제안자는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제작방향과 지면의 구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여수시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제안해야 함
- 다. <u>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제출되는 '제안서'는 1부를 제외한 9부에는 회사를 나타내</u> 는 회사명이나 로고 등 어떠한 상징을 노출해서는 안되며, 평가위원회 PPT 발표 시에도 회사와 관련된 명칭, 로고 등을 노출, 언급해서는 안됨
- 라. 제출된 제안서는 여수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시업 시행 용역」제안 서 평가위원회 심사.평가 기본자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작성함
- 마. 평가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기준 등은 여수시에서 정한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심사계획에 따름
- 바. 제안서의 제작 등에 소요된 경비는 일체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우리 시와 계약한 제안서의 지적소유권은 일체 여수시에 귀속됨
- 사.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 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다면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아.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제작 제안서 및 제작시안의 제출과

- 관련하여, 우리 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법적 책임은 제안 사에 있음
- 자.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계약 후에 도 해제 또는 해지 사유임
- 차.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카.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 전반 사항을 숙자하여야 하며, 이를 숙자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은 제안자의 책임임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차	작성내용
I. 개요	
	- 제안배경 및 목적
 1. 제안개요	- 제안범위
T. 세년개 표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사업수행전략
ᄑ.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전체적인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사업 참여인력)
3. 제작 실적	- 제안사의 연구보고서 제작실적 현황(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제안사별로 기 제작한 대표적인 연구보고서 별도제출 ※ 입찰공고일 현재 완료된 실적에 한함
皿. 사업수행부문	
1. 기획	- 과업 목적에 맞는 기획 구성방안 - 부문별 성격 및 구현방법 세부적으로 기술
2. 세부내용	- 전체 편집디자인 구성안 - 자료수집, 인력 등 활용방법 - 부문별 구성방안 세부적으로 기술
3. 인쇄(제본 포함)	- 인쇄·제본 작업계획
4. 기타	- 제안사 특별제안사항

4.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비고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O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O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서 1부	서식 2
	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4
	O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1부	서식 5
입찰참가	O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6
관련	O 용역 수행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 7
	○ 용역수행 참여 인력별 세부이력사항	서식 8
	O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 9
	O 제안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 행정처분내용(해당자에 한함)	서식 10
	○ 가격제안서 1부	서식 11
	O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 1부	서식 12
	○ 사용인감계 1부	서식 13
	O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서식 14
제안서	○ 제안서(표지 및 목차 포함) 10부	서식 15
관련	※ 1부외 9부에는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3	표시도 불가

5. 기타

- 가.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은 금지함
- 다. 입찰과정, 제안서 참가과정,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 금지함

이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2.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서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서식 5.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 서식 6.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7. 조직 및 인원 현황
- 서식 8. 실적집계표
- 서식 9. 전문인력 보유현황
- 서식 10. 가격제안서
- 서식 11.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
- 서식 12. 사용인감계
- 서식 13. 제안서 표지 및 목차
- 서식 14. 위임장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상호	또는	밭	인명			사업자	나번 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Ŧ		자			주민등	록번호			
입 찰 개	입 (지	찰 명)	공 번	고 호	여수시 공고 2019- 호		입 찰	일 자	2	1019.	
 개 요	입	입 찰 건 명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							8역		
입 찰 보 증 금	│ 납 무 볏 제 및│							결하지 않을 시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대 리 인			-	관한 임합니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성 주[민등록	루번	명 : 호 :		사	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여수시장 귀하

[서식 2]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서

O 용 역 명: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								
O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본인은 귀 시에서 주관하는 위의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9								
○ 법인등록번호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여수시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업체명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상기 본인(정보주체)은 전라남도 여수시가 추진하는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 사업입찰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등록된 개인정보는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그 책임은 여수시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 업체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 ㅇ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 o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입찰 건에 대한 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년간
- ㅇ 개인정보 이용 방법 : 입찰업체 대표자 확인 대조 및 향후 입찰관련 안내사항 전달 등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u>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u>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여수시장 귀하

[서식 5]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보인은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 사업에 대한 입착

	기 가이 레츠하니다.	1 1 1 0 0 7 1 1	3-11 -11	
심기신성시글 풀림	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 : 연락처 :		2013 <u>[</u> .	2	2
제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접수번호	접수인	
붙임 : 1. 입찰관련/ 2. 제안서 10				
			(인)	
	여수시장 귀하			
	절 취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접	수인

접수번호		접수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PI)
제 출 자	직위 : 성명 :	(건)

2019년 월 일

여수시장 귀하

[서식 6]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표자		
사업 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	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7	다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u> </u>	총	명 (직급별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7]

용역 수행 참여인력 현황

□ 회 사 명 : ○ 기준 : 공고일 기준

분야별	성	명	생년월일	고용일자	건강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분야 책임자						
실무 참여자						
○○분야 책임자						
실무자						

- 본 용역에 투입할 실제 인력에 대하여 기재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서식 8]

용역수행 참여 인력별 세부 이력사항

회 사 명 :

성	명		직 책		연	령	
학	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용역수 참여(관련분야 자격증			

	 경	į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실제 인력에 대하여 기재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증명자료 붙임제출

[서식 9-1]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회 사 명 :

연 번	사	업	во	수행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고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 한 단일실적 50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실적

실 적 증 명 서

	업 체 명 (상 호)			대 표	표 자		
신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청	사 업 자 번 호			법인등	록번호		
인	증명서 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제결	출 처	여=	수시
	사 업 의 종 류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	드사업	시행 용역	
	건 명		(실적물건임	을 알 수	- 있도	록 명기)	
계약	사 업 범 위						
맟 大접ザ여	계 약 번 호	계 약 연월일	사업완료일자	사업	기간	사업금액 (천원)	비고
∓do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명	기관명 :		(인) (전호	라번호 :)	
발급 기 관	주 소:		(FA	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대상 : 제안서 평가기준에 맞게 작성할 것.
 - 계약 및 사업내용란은 투명테이프로 접착하고, 증명서 발급기관의 대표직인 반드시 날인 -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실적에서 제외, 5천만원 이상건만 기재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행 정 처 분 내용

당 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자	처분기간 (개월수)	비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부정당업자 지정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대 표 자 : (인)

[서식 11]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명		여수 문화예술 브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	
	주 소			
제 안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일금	원정	
제안금액		(₩)	
		※ 부가가치세, 대형 	뱅수수료 포함하여 산정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019.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12]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

비목별	구분	금 액	산출기초	구성비	비고
	소 계				
			※ 산출기초 상세 기재		
인건비					
	소 계				
경 비					
0 -1					
	계				
Ç	일반관리비				
O	l 윤				
녹	부가가치세				
힙	ᅨ				

[서식 1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대 표 자 :

상기 인은 위 인감을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시행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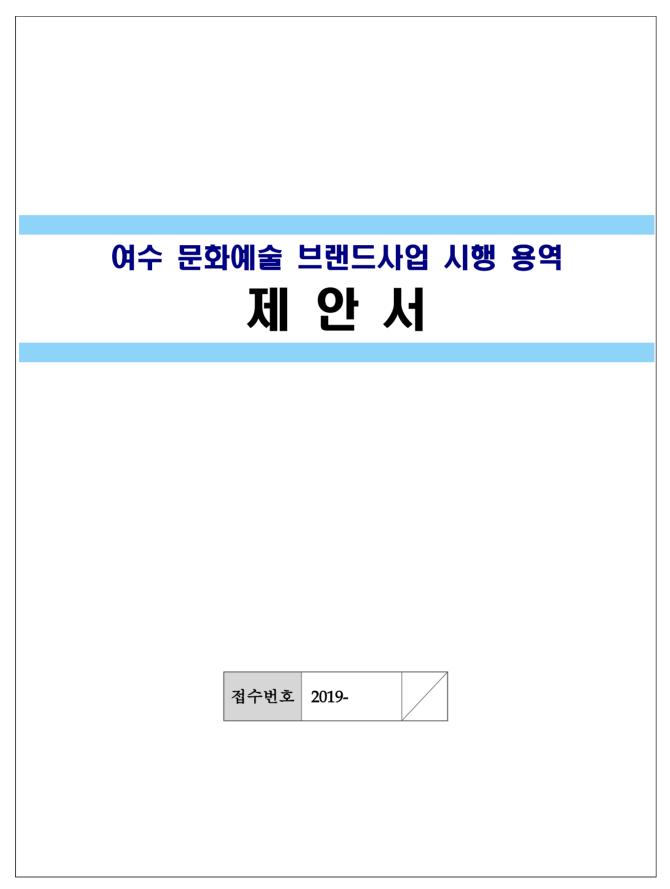
2019. . .

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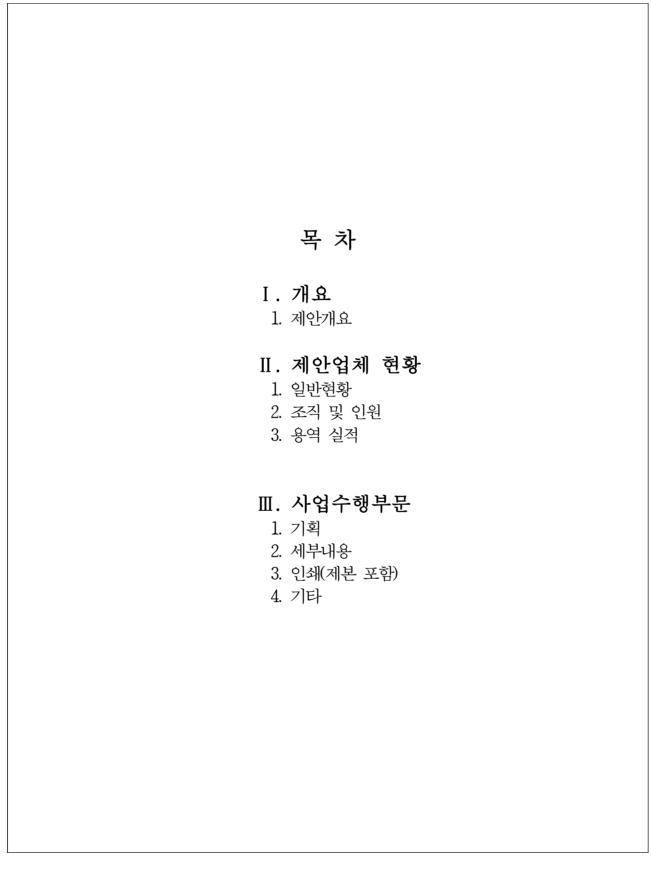
업체명:

대표자: (인)

여수시장 귀하



※ 제안서는 1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1부 외엔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 상기 목차는 최소 기준 목차 안이며 위 목차의 각 항목이외에 추가될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가능

[서식 15]

위 임 장

	성명			
대표자	주소			
	업체명			
	성명			
대리인	주소			
. , –	업체명		연락처	5 : HP: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사업 시행 용역』사업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 . .

대표자 : (인)

대리인: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책임짐

여수시 공고 제2019 - 758호

사업자등록 폐업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여 수 시 장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일자: 2019. 4. 3.)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고기간: 2019. 3. 19. ~ 2019. 4. 2.(15일간)

5. 공고내용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사업자등록 폐업일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매콤연잎족 발	김*수	여수시 여문2로 71-10, 912동 1층 104호 (문수동, 부영아파트 9차)	2018.10.23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휴게음식점	명랑핫도그 여서점	이*영	여수시 여서1로 79 (여서동)	2018.11.30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일반음식점	샘터	손*자	여수시 남산로 60-31 (남산동)	2018.12.31.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6.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2019년 4월 2일까지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 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7. 문 의 처 :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 061)659-4228

여수시 공고 제 2019- 호

공 고

여수시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19.

여수시장

「여수시 체육진흥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가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근거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하며,
- O 여수시 채육진흥협의회 기능과 구성 등 채육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 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 O 각각의 개별조례로 규정된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진흥과 스포츠전지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 (제1조) 목적
- 여수시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항 규정
-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

2. (제5조~14조) 여수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 구성 및 운영 등

-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 체육진흥계획 수립,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함 15명 이내 구성
- O 위원의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3. (제15조) 체육진흥 계획 수립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
- 지역, 도단위, 전국단위, 국제체육행사 유치 및 개최 계획
- 읍·면·동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4. (제16조 ~ 18조)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

- O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 O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체육활동 생활화 추진

5. (제19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 O 전지훈련 관련 시설 및 운영
-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대회 개최, 교통·숙박 등 지원

6. (제20조 ~ 21조) 체육시설의 확충 및 경비의 지원

- O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 O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7. (제22조) 시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 체육진흥 시업 및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체육단체 및 비영리법인 • 단체에 위탁

8. 부칙

- O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 ① 「여수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 ② 「여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 ③ 「여수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④ 「여수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3. 입법예고기간 : 2019. 03. 19. ~ 2019. 04. 08.(21일간)
-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다음 시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715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진남스포츠 센터 2층(오림동)
 - 받는사람: 여수시장(체육지원과장)
 - 전 화: 061-659-3255 팩스: 061-659-5809
 - 이 메일: fish6274@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 메일(E-Mail)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체육진흥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항목별 내용	찬성	반대	기선(기표)	714 41718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10.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 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11.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여수시로 숙식을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2장 여수시 체육진흥협의회

- 제5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여수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체육진흥계획 수립
 -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체육계 워로
 - 2. 대학의 체육담당 교수나 중학교·고등학교 체육 주임교사
 - 3. 체육 단체 및 체육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 4.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5. 사회단체·직능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 요청 시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13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진흥 및 지원

제15조(체육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항이 포함된 체육 진흥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 · 지원 계획
- 2. 학교체육 육성 · 지원 계획
- 3. 전문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계획
- 4. 지역, 전라남도 단위, 전국 단위, 국제체육행사 유치 및 개최 계획
- 5. 체육단체 활동의 육성 · 지원계획
- 6. 읍 면 동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 7.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계획
- 8.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계획
- 9.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계획
- 10.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계획
- 11.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계획
- 12. 공공체육시설 구축물 공간(시무실 등) 활용 계획
- 1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업

제16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시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운영 지원
- 2.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
-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 학회 활동
- 7.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 8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9.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 10.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지원
- 11. 프로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 12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업
-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지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 3. 생활체육동호회 조직의 육성과 지원
- 4. 생활체육 교실 및 시민건강 프로그램 운영
- 5.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 6.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 7.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
 -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
 -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 6.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양성
 - 7.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 8.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다.
 -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 3. 여수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경기종목 동호회
 - ③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시장은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및 운영
- 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홍보
-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대회 개최. 교통 · 숙박 ·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
- 4. 그 밖에 시장이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체육시설의 확충

- 제20조(체육시설의 확충)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1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공공체육시설 설치 사업
 - 2. 공공체육시설(지역주민 개발 학교체육시설 포함) 관리 · 보수사업
 -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

제5장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제22조(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5조의 체육진흥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23조(사전협의) 체육단체는 시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보고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검사한 결과 보조사업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조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5조(표창) 시장은 여수시의 채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있다.

-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3.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제26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 보조 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여수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 ② 「여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 ③ 「여수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④ 「여수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 항제 호
 - 예상되는 바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여수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시항으로 예상되는 발생비용이 없음
- 3. 작성자: 체육지원과장 서 채 훈

여수시 공고 제2019-767호

공 고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여수시공고 제2019-522, 2019. 2.25)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됨

2. 재입법예고사항

현 행	입법예고(안)	재입법예고(안)
제25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5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5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이하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 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연면적 3천제곱 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이하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한다.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제2종 일반주거 지역·준주거지역·중심상업 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제외한다.)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이하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3. **일부 개정 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9. 3.19. ~ 3.29.(1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 중 재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1) 주 소: 위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2) 전 화: 061) 659-4011, 팩스: 659-5833

3) 이메일: mih4025@korea.kr

4) 의견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기타 참고사항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경관지구 안에서"를 "경관지구(제2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중 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안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	②
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그 높이를 따로 정한	
지역의 경우 그 도시관리계획에	<u>경우와 「건축법」</u>
<u> 따른다</u> .	제46조에 따라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이하 <u>(12</u>	1 <u>(12</u>
<u>m</u> 이하)	미터
2.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 <u>(12</u>	2 <u>(12</u>
<u>m</u> 이하)	미터
3. 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하 <u>(1</u>	3 <u>(12</u>
<u>2m</u> 이하)	미터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u>경관</u>	③ <u>경관</u>
<u>지구 안에서</u> 건축물의 규모는 1	<u>지구(제2종 일반주거지역·준주</u>
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u>거지역·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u>
이하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	<u>업지역)안에서</u>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u>있다</u> .	

한려동 통장 모집 공고(안)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당 관할 통장을 임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및 대상지역

가. 모집인원 : 3명

나. 대상지역 : 한려동 2, 7, 10통

2. 지격요건

모집 공고일 기준 당해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3. 위촉 제외대상자

- 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위촉 방법

- 가. 제출 서류심사 및 면접
- 나. 신청 자격을 갖춘 자 중 신청자 2인 이상일 경우 심사를 거쳐 위촉
- **5. 모집기간**: 2019. 3. 19. ~ 2019. 3. 28.(9일간)
 - **※ 면접심사 : 2019. 4. 3.(수)** ※ 면접심사 일정은 재공고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주민총회 개최 시
 - · 주민총회 회의록, 통장지원신청서 1부,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 자기소개서 1부
- 주민총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장 추천서 1부(추천인 명부 주민 20인 이상 추천), 통장지원신청서 1부, 자필 이력서(사진부착) 1부, 자기소개서 1부
- 나. 접 수 처 : 한려동 주민센터

7. 기타사항

- 가. 제출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내용 허위판명 시 즉시 통장 임명을 해임
- 다. 문의 : 한려동 주민센터(☎ 659-1311)

2019. 3. 19.

한 려 동 장 👊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	여수시	한	려동	제()통	·장		
성 명 (한 자)						생년 월일	19 성별 남·여 (연령 만 세)	
주 소						거주 기간	~ 현재(년) (해당 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 택					이메일		
직 업								
최종학력	년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주요경력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봉사활동실적	단체	병(직	책)		활동	기 간	활동내용 비고	
(국민운동 지원 단체경력 및 비영리					. ~ .		·	
민간단체 • 복지시설					. ~ .		/	
봉사 등)	훈 격	(기과	.며\		. ~ · 수 상 ·		면 월)	
】 각 종 수상내역	보 기	(/ 1 1	0)		1 0	1 4	1027172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에 따라 개인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 인				

상기 본인은 신청서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여수시 이장・통 장 ·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려동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019년 월 일

> > 신청인 (인)

여수시 한려동장 귀하

- ※ 지원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인작성), 통장추천서(해당 주민 15명이상 추천)
 - 지원자 제출시표 : 기구가 기구가 (도로그 5), 5 5 7 도 (1.5 1 도 5

					(٥			란		서			
사		진	성명(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0 0(4/1)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등록	기준	지											
주	:	소											
전호	화번호	<u>5</u>	휴대폰 :						전	화 :			
년	월	일		학		력	사		항		학	亚	명
년	월	일		경		력	사		항		기	관	명
년	월	일		포	상	및 형	형 벌	사	항		기	관	명

상기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	을 확인학	합니다.
	2	019.	•	•
	위	작성자 :		(인)

자 기 소 개 서

지원대상	여수시 한려동	통
성 명		
주 소		
성장과정		
(가족관계)		
(*		
성 격		
(장・단점)		
F 7		
통 장 지원동기		
1 2 0 1		
거러 가치		
경 역 가 양 		
지원동기 경력사항		

작성자: (인)

통 장 추 천 서

□ 추천대상자

○ 추천직위 : 한려동 제 통장

○ 성 명:

○ 주 소 : 여수시

상기자는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여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으로 한려동 제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통장 추천(동의)인 명부 1부.

2019년 월 일

한려동 제 통장 추천(동의)인 일동

여수시 한려동장 귀하

한려동 제 통장 추천(동의)인 명부

연번	주	소	성 명	서명(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한려동 제 통장 추천(동의)인 명부

연번	주	소	성 명	서명(인)	비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38					
39					
40					

각	서
---	---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통장 임명 후 통장 수행 능력 부족 및 주민과의 마찰 등 각종 불미스러운 사유로 인하여 동에서 임의해임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위 본인: (인)

한 려 동 장 귀하